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6864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8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686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1. 9. 6 선고 2000나9994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한AA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A 담당변호사 김BA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9. 6. 선고 2000나9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안EB이 주식회사 DA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안EB이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DA은행과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DA은행은 안EB으로부터 송천근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후 안EB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3,865만 원을 대여한 사실, DA은행은 수취인이 미기재인 상태로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고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DA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금채권 및 환매채권을 양도하고 양EA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DA은행과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관계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13조 제2항에 '보증부대출이 어음할인방식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기금(피고)에게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어음은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고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14조 제6호에 '신용보증사고 발생후 기금(피고)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DA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부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 배서인들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들에 터잡아 신용보증약관상 담보의 해지에는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DA은행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어음상 배서인들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담보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약관에 정한 면책특약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를 보증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물적·인적 담보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원심은 또한, 안EB의 할인어음 환매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6호가 '신용보증사고 발생후 기금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어음은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담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어음환매청구권의 행사시에도 DA은행의 과실로 배서인들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된 이상 피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